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30126 경업금지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전용규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주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피고 B은,

가. 서울 용산구 D건물, 1층 E지점에서 2023. 10. 2.까지 미용업을 영위하거나 미용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피고 B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진을 삭제하고, 이를 다시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다.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 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23. 10. 9.까지 미용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다.항과 제2의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고객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환불을 요구하도록 하거나 피고들로부터 미용서비스를 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2017. 9. 23.경부터 서울 용산구 F, G, 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원고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이른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 경업금지약정 등 체결

1) 피고 B은 2017. 9.경부터 2022. 10. 2.까지 원고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21. 2. 1. 체결된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

I(갑)과 헤어디자이너 피고 B(을)은 상호 대등한 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본 계약서는 본 계약 이전에 갑과 을 간에 서면 혹은 구두 상으로 합의된 모든 계약을 대체한다. 을은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다음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한다.

- 다 음 -

제2조(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역할)

- ①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들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위탁관계는 별도의 「디자이너 용역 약정 내용」 또는 특약에 따른다.
- ② 을은 자유소득직업자로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일체의 퇴직금품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또한 을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갑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수수료 일체를 갑에게 먼저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미용서비스 제공 및 선불권)

- ③ **(경업금지)** 을은 갑과 계약 종료 후 적어도 1년 이내에 동종업계(같은 구 또는 동) 타회사를 전직할 수 없으며, 갑 매장 반경 2km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별도의 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부담한다.
- ④ **(고객정보 소유 및 저작권 귀속)**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영업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유인된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갑의 소유로 하며 또한 갑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동안 생성된 사진, 영상물 등은 갑에게 귀속됨을 확인하며, 을이 갑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의 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사진 및 영상물 저작권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다.

2021년 2월 1일

사업주(갑): 상호 I, 대표자 원고

헤어디자이너(을): 피고 B

2) 피고 B은 2022. 10. 2. 원고 미용실을 그만두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사직서

성명: 피고 B

소속: I

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2022년 10월 2일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 퇴사함에 앞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4. 퇴사 후 1년 이내에 반경 1km내에 동종업에 종사하거나 살롱을 오픈하지 않는다(헤어디자이너 자유소득직업 계약서 제6조 제3항 경업금지는 유효하다).

작성자: 피고 B
2022년 10월 2일

3)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20. 5.경 체결된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



I(갑)과 헤어디자이너 피고 C(을)는 상호 대등한 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본 계약서는 계약 이전에 갑과 을간에 서면 혹은 구두 상으로 합의된 모든 계약을 대체한다. 을은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다음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한다.

- 다 음 -

제2조(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역할)

제1항: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들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위탁관계는 별도의 「디자이너 용역 약정 내용」에 따른다.

제2항: 을은 자유소득 직업자로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일체의 퇴직금품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또한 을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갑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수수료 일체를 갑에게 먼저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미용서비스 제공 및 선불권)

제3항: (경업금지) 을은 갑과의 계약 종료 후 적어도 1년 이내에 동종업계(같은 구 또는 동) 타 회사를 전직할 수 없으며, 갑 매장 반경 2km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없다. 기일 경과 후 개점하더라도 제2항에서 본인이 사용했던 개인브랜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별도의 위약금으로 1천만 원 부담한다.

갑: 회사명 I, 대표 원고

을: 헤어디자이너 피고 C

다. 피고 B의 미용실 개업 등

피고 B은 2022. 10. 22.경 원고 미용실에서 도보로 약 300m 떨어진 서울 용산구 D, 1층에서 'E지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피고 B 미용실'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피고 C는 2022. 10. 9.경 원고 미용실을 그만둔 후 2022. 10. 22.경부터 피고 B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 1) 피고들은 원고 미용실을 그만둔 후 1년이 안 된 시점에 원고 미용실로부터 수 백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미용업을 영위하거나 미용업에 종사함으로써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
- 2) 이에 피고 B은, ① 개설한 미용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피고 B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③ 원고의 [별지 2] 기재 고객에게 환불을 유도하거나 피고 B에게 미용서비스를 받도록 유인해서는 안 되고, ④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⑤ 위 ①과 ②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 3) 피고 C는, ① 피고 B 미용실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별지 2] 기재 고객에게 환불을 유도하거나 피고 C에게 미용서비스를 받도록 유인해서는 안 되며, ③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④ 위 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 요지

- 1)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 지위에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2)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와의 계약 종료 이후 그 계약기간 동안 생성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기존 고객에게 환불을 하도록 하거나 피고들에게 미용서비스를 받도록 유인한 적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일부 감액되



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나.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들은 자신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더라도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미용실 이용자는 미용사의 실력, 서비스 품질, 이용료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용실 또는 미용사를 선택한다. 그러나 미용실 이용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 미용실의 브랜드, 위치, 해당 미용실이나 미용사의 일반적인 평판이나 인상, 인테리어와 설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용실이나 미용사를 선택한다. 이와 같은 미용실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접근 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용실을 마련한 다음 고급 자재로 인테리어나 각종 설비를 갖추고 우수한 미용사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미용실의 평판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다른 한편 미용실 이용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선호하는 미용사를 계속적으로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위와 같은 미용사가 해당 미용실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쉽게 미용실을 바꾸기도 하고, 주거지 또는 근무지 등 일정한 생활반경 내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미용실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유치된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특정 미용사가 미용실 운영자와 계약 관계를 종료한 후 미용실 운영자의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거나 그곳으로 이직 등을 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고객이 특정 미용사의 새로운 미용실로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 이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고,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서 종국적으로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대신 피고들의 미용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매출 중 일정 부분을 분배받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

2)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면, 경업금지기간을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경업금지장소와 관련해서는 같은 구 또는 동에 있는 동종업계로 전직할 수 없도록 하거나 원고 미용실에서 반경 2km내에는 개점할 수가 없도록 제한하였다. 특히 피고 B의 경우 원고 미용실 사직 당시 경업금지장소가 원고 미용실 반경 2km 이내에서 1km 이내로 완화되기도 하였다. 피고들은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경업금지장소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미용업을 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이 피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중대협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들은, '원고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미용 기술을 전수받은 적이 없고, 피고들 각자 비용을 지불하여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이 개인 비용으로 외부에서 미용 관련 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 미용실에서 아무런 기술 등을 전수받은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 미용실에서 근무한 기간(피고 B은 약 5년, 피고 C는 최소 2년 이상)을 고려할 때, 위 기간 동안 피고들이 습득하였을 원고의 미용실 운영·인력 및 고객관리 방법, 미용 기술, 서비스 매뉴얼 등이 아무런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면, 경업금지기간과 장소, 금지 업종,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 위약금 등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계약서 전체에 대한 서명뿐만 아니라 경업금지조항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 밑에 별도로 서명을 하였다. 이 같은 계약의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의무와 위약금 약정에 관한 내용을 분명하게 밝혔고, 피고들도 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1) 미용업 영위 등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서울 용산구 D, 1층 E지점에서 2023. 10. 2.까지 미용업을 영위하거나 미용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진 삭제 등 청구 및 간접강제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계약서 제6조 제4항 본문은 '을(피고 B)은 계약기간 중 갑(원고)의 영업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유인된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갑의 소유로 하며 또한 갑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동안 생성된 사진, 영상물 등은 갑에게 귀속됨을 확인하며, 을이 갑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원고 미용실에서 생성되어 원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위 계약 종료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별도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사진 게시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계약서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



정에서 위 사진을 삭제하고, 이를 다시 게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피고 B은 위 계약서 제6조 제4항 단서에서 '을의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사진 및 영상물 저작권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은 '저작권'의 오기이므로 피고 B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이 '저작권'의 오기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조항 본문에서 '계약기간 동안 생성된 사진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무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이 '저작권'의 오기임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약금 청구

가) 원고와 피고 B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 10,000,000원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 B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인 위약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 B은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 후 약 20일 만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한 점, ② 개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은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 이전부터 위 개업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업금지약정



을 고의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작성한 사직서의 내용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점, ③ 그 밖에 피고 B 미용실의 위치, 경업금지기간과 장소, 위약금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 10,000,000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약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환불 및 미용서비스 이용 유도 행위 금지 청구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의 퇴사 무렵인 2022. 10. 1.부터 2022. 12. 12.까지 원고 고객 16명이 정액권을 환불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 이외에 피고 B이 위 고객들에게 환불을 유도하였다거나 자신이 개업한 미용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의 기존 고객들이 자신들의 담당 미용사인 피고 B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 B이 대신하여 원고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고 환불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고객들에게 환불을 유도하였다거나 자신의 미용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C에 대한 청구 판단

1) 미용업 영위 등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는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서울 용산구 D, 1층 E지점에서 2023. 10. 9.까지 미용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약금 청구

원고와 피고 C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 10,000,000원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 C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 C는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 후 10일이 조금 지난 시점부터 피고 B 미용실에 종사한 점, ② 피고 C는 피고 B 미용실이 개업하자마자 위 미용실에 종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 이전부터 피고 B이 미용실을 개업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③ 그 밖에 경업금지기간과 장소, 위약금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 10,000,000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약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환불 및 미용서비스 이용 유도 행위 금지 청구

갑 제1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피고 C가 담당하는 고객이 2022. 12. 7. 정액권을 환불받은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 이외에 피고 C가 원고 고객들에게 환불을 유도하였다거나 자신의 미용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박준범

 판사 김병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별지 1]



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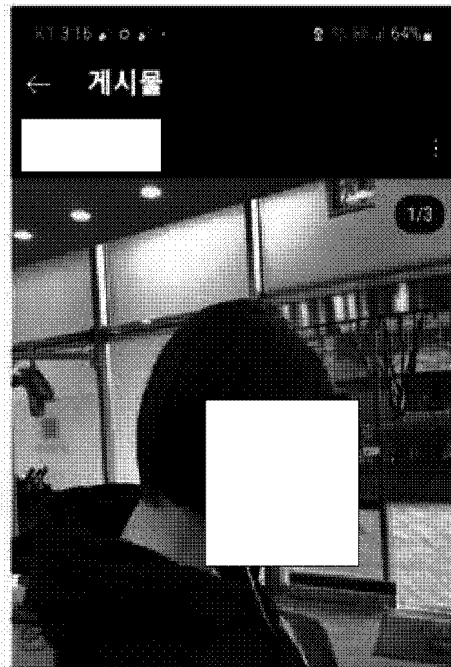


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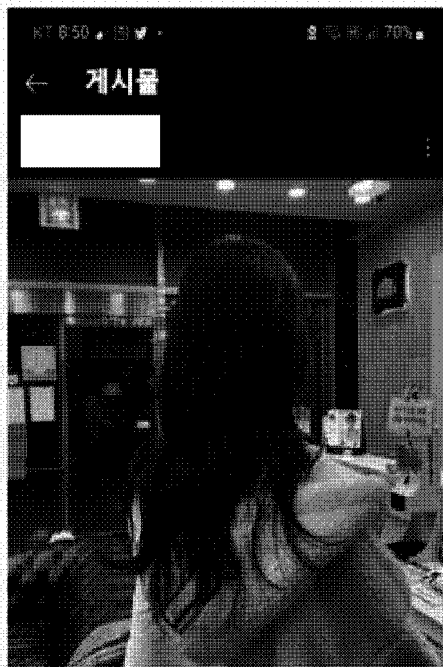


사진 3



사진 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사진 5



사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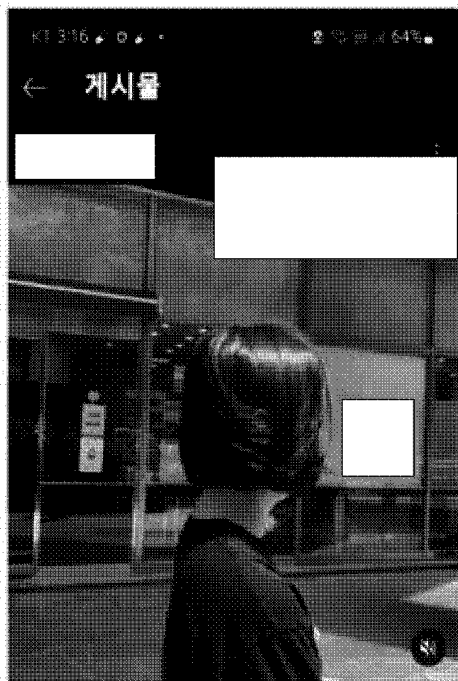


사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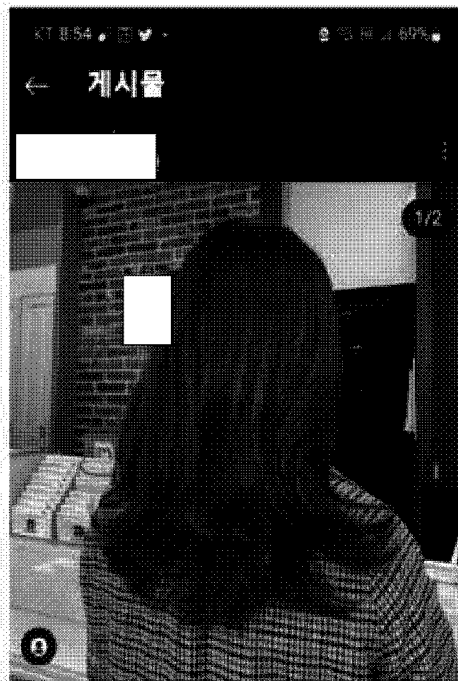


사진 8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별지 2]

순번	고려 번호	거래기록사항
1	4	
2	23	
3	105	
4	139	
5	140	
6	141	
7	143	
8	146	
9	148	
10	149	
11	150	
12	151	
13	152	
14	153	
15	154	
16	157	

(끝.)